#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54

발의연월일: 2022. 4. 7.

발 의 자 : 황보승희 · 구자근 · 김도읍

박대수・박 진・백종헌

서병수・송석준・유경준

전봉민 · 정동만 · 조명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한 규칙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바,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금액은"을 "금액 및 휴일의 종류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 중 "第3項의"를 "제4항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시간
	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등으
	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근
	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
	른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류와 <u>금액은</u> 中央選擧管理委員	금액 및 휴일의 종류는-
會가 정한다.	,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 3. (생 략)
-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 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 5. ~ 7. (생략)
- ② ~ ⑧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항</u>
<u>의</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